

공무원 행동강령

2020
7. 30
시행
(일부개정)

1. 공정한 직무수행

- ☑ **상급자의 부당지시에 대한 처리**
상급자에게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 **사적이해 관계 직무의 회피**
직무관련자가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등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 신고
- ☑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금지
- ☑ **가족 채용 제한**
고위공무원, 인사담당 공무원 등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또는 그 산하 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고위공무원, 계약담당 공무원 등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또는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 ☑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와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예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하는 경우
-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여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금지
-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자신 또는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청탁 금지

2.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 ☑ **알선, 청탁 등의 금지**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청탁 등을 하는 행위 금지
- ☑ **공용물의 사적 사용과 수익금지**
관용차량, 청사, 교사, 관사 등 공용물과 예산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 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 금지
-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금지
-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공무원은 인·허가 등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부당행위 금지 소속 기관에 대한 업무전자 및 비용, 인력부담 행위 금지
- ☑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는 행위 금지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는 행위 금지(예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의 가액 범위(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단, 농수산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 기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3.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강의, 강연, 기고 등)를 할 때에는 외부강의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적용은 모든 외부강의 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에 적용
- ☑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 대차 또는 부동산 대여 금지, 경조사 통지 제한**
(경조사 통지 예외) 친족/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 신문, 방송 또는 내부통신망 등/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의 회원



4. 이행관리 체계 등

- ☑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알선·청탁,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 통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감독 기관의 부당한 요구)
- ☑ **누구든지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소속기관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 ☑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확인한 경우**
해당 공무원 징계 등 필요한 조치
- ☑ **이 강령에 위반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제공한 자 또는 제공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 및 거부의사를 밝힘, 반환이 어려운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
- ☑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도교육청: 감사관
직속기관: 총무과장(없는 경우 총무부장)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공립학교: 교감(원감) - 없는 경우 학교장(원장)이 교사 중에서 지정

